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64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가소78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오○○, 김○○, 차○○, 전○○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오○○, 김○○, 전○○은 각 50,000원 피고 차○○은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오○○, 김○○, 차○○, 전○○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강○○, 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강○○, 임○○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오○○, 김○○, 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차○○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차○○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9. 1.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대가리' 역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31. 04: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폭행사건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들은 2015. 9. 1. 이전에 2015. 8. 18. 자 각 언론사 기사가 게재된 네이버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명	댓글내용
강○○	3류 배우
오○○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음 조커어
김○○	이 사람 연예인인가???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차○○	사장새끼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멍이새끼네... 동영상 나왔는데도 개소리하는 사장이나 술쳐먹고 사람때린 인간이나... 술쳐먹은 놈의 개소리를 바탕으로 개소리하는 사장놈도 명예훼손으로 대가리랑 구치소가면 돼겠네... 동영상보면 먹살잡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는데 사장새끼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다닌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오냐는 개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 동영상 공개전까지 소속사가 지껄인 거짓말때문 시비가 붙어??? 술쳐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임○○	일은 A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나다니.. 그것도 진심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놈도 쓰레기네 A 니가 직접 무릎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
전○○	영상봐....워..가오 존나잡네...매장시켜야한다 저런게 연 예 인 이라고.. 저기사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생각하니 내가가서 쳐때리고싶네암튼 영원히 빠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강○○, 전○○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원고와 피고 오○○, 김○○, 차○○, 임○○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

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 264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고 강○○,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내용 및 관련 언론 기사의 내용, 위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 강○○가 댓글로 작성한 '3류 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위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 임○○가 작성한 댓글 중 '쓰레기'라는 표현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소속사 대표를 지칭한 것이며, 피고 임○○가 작성한 나머지 댓글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 임○○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오○○, 김○○, 차○○,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 김○○, 차○○, 전○○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오○○, 김○○, 차○○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은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원고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원고에 대한 경멸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난으로 보이며, 위 각 댓글의 전체 문맥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댓글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의견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각 댓글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원고가 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오○○, 김○○, 전○○ 각 5만 원, 피고 차○○ 2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오○○, 김○○, 전○○은 각 5만 원, 피고 차○○은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댓글 작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 김○○, 차○○, 전○○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 임○○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오○○, 김○○, 차○○, 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강○○, 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오○○, 김○○, 전○○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그 인용액이 매우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일부 승소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중환

 판사 이유영

 판사 구자광